



제 420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 및 프로그램 배정 기준 마련 〉

■ 김예지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806호)

2025. 1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 및 프로그램 배정 기준 마련 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예지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1. 22.

다. 회 부 일 : 2024. 11. 2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.

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‘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’ 결과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.1%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.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,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% 이상으로 설정하고, 공연 프로그램의 30%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 및 프로그램 배정 기준 마련 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)

가. 개정안 요지

-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,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연간 공연장 가동률을 70% 이상으로 하고, 연간 공연 프로그램의 30%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예술 분야 공연 프로그램에 배정하여야 함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안 제8조의제4항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2(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의2(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제2호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 <u>1. 연간 공연장 가동률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</u> <u>2. 연간 공연 프로그램의 100</u>

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분의 30 이상을 기초예술분야 공연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</u> ④ ----- 수립과 제3항에 따른 기초예술분야 공연 프로그램의 종류 등에----- -----.
--	--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 제8조제1항1)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8조의2²⁾에 따라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,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.

- 공공 공연장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의 약 43.8%를

-
- 1) 「공연법」 제8조(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2) 「공연법」 제8조의2(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공연장의 설치목적
 2.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
 3.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
 4.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차지³⁾하고 있어 국내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.

- 그러나 전체 공연장의 공연프로그램 가동률⁴⁾은 44.4%, 공연장 가동률⁵⁾은 54.5%로 공연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, 특히 공공 공연장 중 문예회관과 기타 공공 공연장의 경우 평균치를 밑도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.

[시설특성별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장 가동률]

(단위: 개, %)

구분 ⁶⁾	공연장 수	공연프로그램 가동률	공연장 가동률
중앙정부	40	61.8	67.5
문예회관	440	45.1	53.6
기타 공공 공연장	349	28.4	43.8
대학로	130	71.3	74.8
대학로 외 민간	692	46.0	56.0
계	1,651	44.4	54.5

자료: 2024년 공연예술조사

3) 2024년 공연예술조사 보고서(예술경영지원센터)에 따르면 전국 1,651개 공연장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및 공공 공연연습장은 584개관으로 전체의 43.8%를 차지함.

4) $\text{공연 프로그램 가동률}(\%) = \frac{\text{공연일수} + \text{공연준비일수}}{365 - (\text{시설물점검·설비일수}) + \text{연간 휴관일수}} \times 100$

※ 시설물점검·설비일수는 42일, 연간 휴관일수는 52일로 통상 수치를 적용함.

5) $\text{공연장 가동률}(\%) = \frac{\text{공연일수} + \text{공연준비일수} + \text{기타행사일수}}{365 - (\text{시설물점검·설비일수}) + \text{연간 휴관일수}} \times 100$

※ 문예회관과 같이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공연장일 경우, 교육 및 행사 등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행사일수를 포함한 공연장 전체의 가동률을 산출함.

6) 2024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른 공연장 시설 특성 구분은 다음과 같음.

- 중앙정부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기금과 운영자금을 보조하는 시설
- 문예회관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비를 지원받은 공공 공연시설
- 기타 공공 공연장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은 공공 공연시설
- 대학로: 대학로 지역에 소재하는 민간 공연시설
- 대학로 외 민간: 대학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민간 공연시설

- 이에 개정안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및 기초예술 공연 프로그램 배정의 정량적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, 공공 공연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의 참여 및 공연 창·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다만, 개정안에 대해서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 및 공연 프로그램의 장르 등 운영 계획은 공연장의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과 지방 재정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연장의 자율적인 운영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의 이유로 이를 법으로써 정량화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**문화체육관광부**는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기초 예술 분야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, 공연장 가동률과 공연 장르 비율은 각 지역의 인구구성에 따른 지역민 수요와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, 정량적 기준으로 규정하는 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- **서울특별시**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, 특정 장르를 중점적으로 공연하는 전문 공연장을 감안하여 공연 프로그램 장르 배정 기준에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**경기도 군포시** 및 **부천아트센터**는 연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및 재정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,

군포시는 공연 프로그램의 장르 비율 규정 시 지역 관람객의 수요가 부족한 장르를 과다 공급할 우려를 추가적으로 제기하였음.

- 경상남도문화예회관은 공연장의 가동률은 지역별 공연장의 사업 예산, 지역 인구, 공연인력 및 공연단체 기반 등 변수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정량 목표보다 정성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379